

‘짜라시 유포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물려야

법원 판례로 본 ‘확인 절차 없는 보도’의 위법성



6월 30일 정오경 짜라시 형태로 카카오톡에 퍼진 ‘이건희 회장 사망설’은 그 여파가 상당했다. 당일 삼성물산 주가는 장중 8.5% 이상 급등하며 등락을 반복했다. 짜라시 사태로 출령인 증시만 무려 12조원 규모라고 한다. 온라인 상의 잘못된 정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사람 사는 곳이니,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자 상상의 동물이니, 별별 소문이 나올 수 있기는 하다. 그래서 주로 여의도 증권가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카더라’라는 소문에 근원하는 짜라시가 나돌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짜라시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게다가 일부 사이버언론이 이에 대한 아무런 사

실 확인 없이 ‘우라카이(신문에서 기사 마감에 임박해 다른 신문사의 기사(특종 포함) 일부를 대충 바꾸거나 조합해 새로운 자기 기사처럼 내는 행위)’하거나 심지어 이를 빌미로 기업에 대해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 없는 보도 처벌 강화해야

이렇듯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대표적인 판결로 ‘수사 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다가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

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7.15.선고 2004다53425 판결)는 판결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에 열거한 <사례>와 같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절차 없는 보도가 위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원의 판결은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다.

확인 절차 없는 보도의 위법성 판결 사례	
판례	
1	지역언론사가 2000년 12월 14일 "00지역 택시노조 해고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00이 자격 없이 소송수행의 대가로 택시 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용자측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9. 14. 선고 2004나2610).
2	한 지상파 방송사가 2005년 10월 23일 뉴스 프로그램 '경찰의 카드깡' 제하의 보도에서 "00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오래전부터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카드깡이 행해져 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00경찰청은 연금매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고, 이렇게 받은 수수료는 경찰청의 최고위층에 전달되어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일정 부분 유도신문을 한 끝에 자신의 생각에 일부 부합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 및 물적 증거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선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14032 판결).
3	한 지상파 방송사가 2004년 2월 16일 및 같은 달 20일 뉴스 프로그램 '학교는 나 몰라라'와 '수업 중 왕따 촬영' 제하의 보도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 "동영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 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 동영상'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방송한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방송은 피해 학생 측의 입장에만 치우쳐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서, 주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청소년 학생 문제에 관한 한 언론기관이 비판자의 입장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언론기관은 청소년 학생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 요청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 된다"고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4가합62370 판결).

다만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면 피해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적정하게 배상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우리 법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 총수의 사망이라는 찌라시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그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막대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사실 확인 없는 우라카이 보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권력의 부패와 기업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이를 거시적으로 보면 정치권력과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언론과 정치권력, 기업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용인은 언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찌라시 내용을 그대로 베껴 보도하거나, 추측성 기사를 빌미로 기업을 압박해 광고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언론까지 언론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실질적으로 사이버언론에 대한 강력한 대안임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K A A**

